

재입학

1. 정의 (구 익산대 제적자 포함)

가. 자퇴 및 미등록으로 제적되어 학적을 상실한 자가 다시 입학을 위하여 제적하였던 동일 학년 이하에 등록함으로써 학적을 다시 갖게 되는 것을 말함.

2. 관련 법규

가.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, 전북대학교 학칙 제42조, 전북대학교학사운영규정 제4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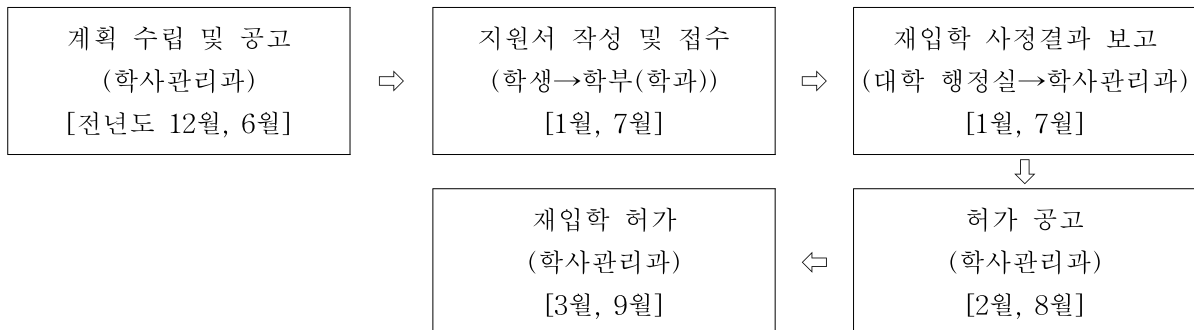
3. 재입학 대상 및 제외대상

가. 재입학 대상 : 미복학, 미등록, 성적경고 등으로 제적되었거나 경제적 사유, 신체적 사유 등으로 자퇴한 자

나. 재입학 제외 대상자

- 1) 재학년한까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
- 2)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
- 3) 성적경고 제적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

4. 업무 흐름도



※ 구 익산대 제적자의 재입학 지원서는 학사관리과에 제출

5. 지원서류 및 방법

가. 지원서류 : 재입학원서, 제적증명서, 성적증명서, 서약서 각 1부.

나. 지원방법 : 각 학부(과)에 비치된 재입학원서(사진부착)를 교부받아 작성하고 제적증명서, 성적증명서, 서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학부(과)에 제출

6. 허가 가능인원(총여석) 산정 기준

가. 재입학 허가년도를 기준으로 1~4학년 학생 중 대학을 떠난 제적자 총수에
서 1~2학년 제적자수는 편입학 여석으로, 3~4학년 제적자수는 재입학 여석

으로 산정하여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
- 1) 여석산정은 직전학기의 재적생 변동상황 보고(4.1자)에 명시된 제적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, 편입학 여석 산정시 재입학 여석으로 확보한 1~2학년 제적자수를 추가함.
- 2) 총여석의 범위내에서 학년별 모집단위별로 구분하지 않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.

다만, 의료인(간호학과, 의학과, 치의학과, 수의예과 등)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 할 수 있으며, 사범대학은 편입학, 재입학, 정원의 입학 및 전과 등을 합한 수가 학과별 입학정원의 10% 범위내에서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으며, 사범대 재입학 신청은 모집인원 학과 및 학년에 해당하는 학번만 신청 가능

※ 예시) A학과의 3학년 제적자 1명 여석 발생시, B학과 1학년 재입학 여석으로 사용 가능

7. 재입학대상자 결정

- 가. 재입학허가 인원은 학년별 모집단위별로 구분하지 않고 재입학 총여석범위 내에서 결정하되, 신청 인원이 총 여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재입학 여석 대비 신청인원이 많은 모집단위별 순으로 초과되는 인원만큼 제외함.
- 나. 교원과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학과는 모집단위별 여석의 범위내에서 결정함.
- 다. 재입학자 선발 우선순위는 취득학점수가 많은 순으로 하고, 취득학점이 같을 경우, 평균이 고득점인 자로 결정함.

8. 교과 이수

- 가. 성적경고 효력은 소멸되나, F학점은 재이수하여야 함.
- 나. 재입학 전 취득학점은 인정함.

9. 재학 년한

- 가.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. (학칙 제39조)

10. 등록 및 수강신청 : 재입학 허가통보시 별도 통보

- 가. 통보된 기한내에 등록(등록금 납부, 수강신청)을 완료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
- 나.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휴학이 불가함.

서 약 서

()대학 ()학부(과) ()학년

성 명 :

상기 본인은 사유로 년 월 일 제적
되었는 바, 금번 재입학을 지원함에 있어 한번 더 배움의 기회가 주어
진다면 현행 학칙은 물론 제 규정을 준수하고 학교의 지시사항을 철저히
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 년 월 일

서 약 인 : (인)

전북대학교총장 귀하